

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훈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4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31일

발 의 자: 김경훈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동욱,  
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지향, 김형재,  
김혜영, 김혜지, 남창진,  
박성연, 박영한, 서상열,  
송경택, 유정인, 이상욱,  
이영실, 이종태, 장태용,  
정준호, 최민규, 홍국표  
의원(24명)

## 1. 제안이유

-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자 선정 심의 외의 별다른 기능이 없으므로, 이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활용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(안 제6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-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회의의원(이하 "시의원"이라 한다)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⑤ <u>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시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u>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